



2018

농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안내



농림축산식품부

Ministry of Agriculture, Food and Rural Affairs

주요 사업 내용

1 사업대상

|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·법인 |

- '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'17년 벼 재배사실 확인(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) 농지를 대상으로 하되, '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의 경우는 예외적*으로 대상에 포함('17년 전환 농지 면적은 지자체가 확인)

* '17년 전환면적을 최소 1,000㎡ 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 추가 신청 시[단, '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면적 전체를 '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면서, 신청인 소유의 신규면적(1,000㎡이상)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면적 추가 요건 예외 인정]

'18년 농식품부 선정 청년농업인이 신청한 농지, 논 타작물 생산에 따른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농지, 진흥지역의 농지,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·규모화된 지역, 사업참여 농지면적이 많은 신청자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

사업 대상 제외 농지

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간척지, 정부매입비축농지, 농촌진흥 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,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(하계작물 해당) 등

2 사업신청

- 농지소재지의 읍·면·동 사무소에 접수 ('18.1.22 ~ '18.4.20)
- 읍·면(리·통)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여 마을대표의 확인 (날인 또는 서명)을 받아 제출

3 대상품목

- 사업 대상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
 -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, 배추, 고추, 대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
- 특정 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,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조사료, 지역별 특화작물 중심으로 추진

4 지원단가

- 평균 단가 340만원/ha(국비 80%, 지방비 20%) 내에서 조사료, 일반·풋거름작물, 두류 등 단가 차등화
-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군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

품목군별 단가

구분	조사료	일반· 풋거름작물	두류	전체 (평균)
지원단가(만원)	400	340	280	340
사업계획면적(ha)	15,000	20,000	15,000	50,000

| 조사료 : 사료용벼, 옥수수, 수단그라스 등

| 일반작물 : 사업 대상 제외 품목(무, 배추, 고추, 대파)· 조사료·
두류·풋거름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

| 풋거름작물 : 풋베기콩, 헤어리베치, 세스바니아, 네마장황, 수단그라스, 옥수수, 수수, 트리티케일, 호밀, 해바라기, 코스모스, 유채, 메밀 등을 2개 작물이상 혼합재배(혼파) 하는 경우만 인정

| 두류 : 콩, 팥, 녹두 등

5 이행점검 및 지원금 지급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(법인)에 '18년 11월 중 지원금 지급

2018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

이런 점이 궁금해요!



일부작물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한
이유는 무엇인가요?

Q1



수급 영향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이 크고 산지폐기 등
수급조절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채소류는 사업 대상에서
제외하였습니다.

* 사업대상 제외 품목 : 무, 배추, 고추, 대파

경관보전직불금을 받은 농지도
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?

Q2



'18년 하계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
제외 됩니다. 단, 유채 등 동계 경관보전직불금 수령
농지는 해당 작물 수확 후 벼 대체작물 재배가 가능하므로
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.

휴경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?

Q3



휴경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(미 포함)됩니다.

논에 타작물 재배 시
쌀소득 변동직불금은 받을 수 있나요?

Q4



논 타작물 전환 사업참여 시 쌀 고정직불금은 수령이
가능하나, 쌀소득 변동직불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.

지원금 산출 예시

- '17년 논 공 전환(3ha) 농가가 '18년도 사업신청 시 기존 공 전환 면적 2ha를 유지하면서, 신규농지('17년 벼재배농지) 조사료 3ha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금 1,480만원 수령 가능

[산출근거] ['18년 신규 조사료재배 지원금 1,200만원(3ha×400만원/ha) + '17년
전환농지의 공재배 지원금 280만원(280만원/ha×2ha×50%)]

- '17년 논 공 전환(2ha) 농가가 '18년도 사업신청 시 기존 공 전환 농지를 풋거름 작물로 변경하여 2ha를 재배하면서, 신규농지('17년 벼재배농지) 조사료 3ha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금 1,540만원 수령 가능

[산출근거] ['18년 신규 조사료재배 지원금 1,200만원(3ha×400만원/ha) + '17년
전환농지의 풋거름작물재배 지원금 340만원(340만원/ha×2ha×50%)]

사업 추진 체계

1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계획수립·통보



농림축산식품부 → 시·도 → 시·군

- 농림축산식품부 : 시도별 물량배정, 세부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

2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계획수립



시·도 및 시·군

-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농산부서, 축산부서, 기술원(센터), 쌀·축산농가 등이 참여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·운영(15명 내외)하고, 논 타작물재배 계획을 수립

•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추진협의회의 역할

지자체 논 타작물전환 지원 사업계획의 심의, 사업지원대상자 선정심의, 사업추진단계 점검 및 종료 후 평가 등

3 사업대상자 선정



시·군(읍·면·동)

- 사업신청 : 읍·면 (리·통) 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농지소재지의 읍·면·동 사무소에 제출
 - 사업자 선정 : 시장·군수(읍·면·동장)
| 읍·면·동 또는 시·군별 목표 면적 범위 내에서 사업자 선정
 - 사업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합여부, 중복신청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 관리(시장·군수)
| 시장·군수는 확인 결과를 계통 보고
|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신청 시 제출 받았던 약정서에 서명날인 후 2부 중 1부를 사업대상 농지 선정내역과 함께 사업신청인에게 통지
- *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
- * 농림축산식품부(시·도)는 필요시 시·도(시·군)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량의 조정 및 재배정 가능

4 사업추진



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

- 사업 추진상황 점검(농림축산식품부, 지자체 합동)
- 사업 추진 이행 점검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
- 시·도로 자금 배정(농림축산식품부)
- 사업비 집행(지원) 및 정산 결과 농식품부에 보고(시·도지사)

5 사업 평가



농림축산식품부, 시·도

- 사업추진 결과 분석
-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

문의처



- 사업내용 관련 : 시·군(농업담당 부서), 읍·면사무소 및 주민센터
- 재배기술 관련 : 도 농업기술원, 시·군 농업기술센터
- 기계장비 관련 : 각 시·군 농업기술센터(농기계임대사업소)
- 조사료 관련 : 시·군(축산담당 부서), 지역 농·축협(조사료담당)
- 종자구입 관련
 - (콩) 국립종자원(지원)
 - (조사료) 옥수수 : 지역 농·축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(도지회 조사료담당)
총채버 : 국립종자원(지원), 농업기술실용화재단(종자사업팀)
- 이행점검 관련 : 시·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

농림축산식품부

Ministry of Agriculture, Food and Rural Affairs